

## 여전공의 출산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하여

박 경 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아기를 둘 낳은 여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수 없습니까?” 수개월 전 필자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낸 사람은 전공의 수련 중에 아기 둘을 갖게 된 아빠의 호소였다. 이들 동갑내기 부부는 함께 수련을 받으면서 아기를 둘 낳을 예정은 아니었

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둘째 아기를 출산하여 여전공의 엄마는 3개월의 산후휴가를 쓰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수련기간의 부족으로 “수련필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으니 1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꼼짝없이 재수를 해야 할 지경에 놓인 부부가 백방으로 알아보다 어떻게든 탄력적으로 규칙을 운용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뛰어 다녔으나 너무나도 벽이 높았다.

십여 년 전만해도 여전공의들은 분만 직전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진통이 오면 바로 분만실로 뛰어 들어갔고, 분만 후에도 한 달가량 산후조리를 한 후 푸석한 얼굴로 다시 근무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산 휴가가 석 달은 되어야지 어떻게 한 달 만에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여성계의 요구가 실효를 거두어 모든 직장에서 산후휴가는 3개월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충분히 쉬게 되어 잘되었다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인즉 병원 내에 뺏힌 인력으로 과의 일이 돌아가는 데, 한 사람이 석 달씩 휴가를 내면 파트너 전공의의 부담이 배가 되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도 쉬는 여전공의의 마음도 좌불안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일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전공의 자리가 3개월 비었다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 pool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수련 기간 중 아기

를 또 하나 낳게 되는 경우는 정말 본인으로서도 재앙에 가까운 심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문제이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출산을 늘리자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기 둘을 낳은 여전공의는 항의한다. “두 번째 아기를 낳은 경우는 3개월을 쉬지 않으려 했어요, 2개월 또는 1개월만 쉬고 나오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을 억지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공의 과정 중에 출산은 한 번만 가능하고 두 번의 산후 휴가를 갖게 되면 추가 수련은 물론 전문의 고시를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임신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두 번째 임신한 여전공의들에게 정부나 수련기관에서는 어떤 선택을 강요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의사들의 출산을 장려하려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준수에 유연성을 두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의사회에서도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의 당사자였던 전공의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신청을 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당해 연도에 전문의 시험은 치르고 그 후 3개월의 추가수련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으니 일단 내년부터 출산으로 인한 재수생은 생기지 않을 듯 싶다.

임신한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에 업무 부담은 물론 동료 전공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스트레스이며, 동료 전공의 역시 상대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게 되므로 임신한 전공의에 대하여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 후에 양육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여의사들 대부분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적이나 감정적인 스트

### Contents

- ▶ 01 시론
- ▶ 02 시론
- ▶ 03 정기총회
- ▶ 04 수상소감
- ▶ 05 공공경쟁규약
- ▶ 06 공공경쟁규약
- ▶ 07 공공경쟁규약
- ▶ 08 인터뷰

레스는 물론 심한 죄책감과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근무 시간이나 당직 스케줄을 유연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병원 내에 양육시설 유치등도 고려해야 한다. 여전공의의 문제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업무 수행 능률이나 환자 진료의 질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개선점들이 조속히 논의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숫자는 16,000명이고, 이 중 35.5%인 5,802명이 여전공의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결혼 또는 출산의 적령기라 할 수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는 2009년에 여전공의, 의과대학과 의전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수련 환경과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여전공의의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43%에서 두 명, 39%에서 한명의 자녀를 원하였다. 전공의 과정 중에서 3개월 이상 휴가를 갖게 되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규정 하에서는 여전공의의

57%만이 한 명의 자녀를 원하였고, 33%에서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출산과 육아는 본인의 carrier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문에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 선발 시에 “결혼 및 임신 금지 서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 각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니 여전공의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곧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여전공의에 대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학회가 주축이 되어 전문의 수련과정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다가올 미래 의사의 50%가 여의사임을 감안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 토론회

### “새로이 도입되는 치료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역사적, 학술적, 윤리적 고찰 -

본회는 최근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 적용과 관련된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사례들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우리 의료계에 윤리적 쟁점으로 부각된 새로운 치료법들의 현황과 피험자의 보호 및 의료인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구인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 일 시 : 2011. 5. 15(일) 오후 1:30~4:30
- 장 소 :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D (홍은동 소재)
- 주 최 : 대한의학회
- 주 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시간	내용	발표자
1:30-1:40	개회인사	김성덕 (대한의학회 회장)
1:40-2:00	새로운 치료법 임상적용 사례들의 역사	좌장 : 김건상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김옥주 (서울의대 의사학)
2:00-2:20	국내 사례고찰	손영수 (제주 의대 산부인과학)
2:20-2:40	국내 검증기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	이동수 (서울의대 핵의학)
2:40-3:00	국내 검증기제 (NECA의 역할)	배종면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
3:00-3:20	피험자보호	좌장 : 고윤석 (한국 의료윤리학회 회장) 박재현 (경희의대 의학 교육학)
3:20-3:40	이해상충	강명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40-4:00	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영모 (울산의대 인문 사회의학)
4:00-4:30	종합토론	

## 2011년도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 개최

### “차기회장에 김동익 부회장 선출, 신규 회원학회 인준, 객현모 교수 외 16명 『명예의 전당』에 헌정, 의학학회 대상 시상 등” 다뤄

대한의학회는 3월 2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 차기회장에 김동익 부회장 선출

대한의학회는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기 평의원회에서 내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대한의학회 회장으로 김동익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동익 차기회장은 197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학회 재무이사·부회장,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회장, 의협대의원회 부의장 등 굴직한 주요 보직을 거치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 · 정관개정(안) 통과

정관상에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회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평의원 의결사항에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변경시에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업결과와 회계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문안을 삽입하였다.

#### ·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

대한병리학회를 비롯한 15개 학회에서 의협 파견 대의원 명단을 변경 신청함에 따라 토의한 결과 학회에서 선정한 분을 의학회 대의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의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1명을 의학회 대의원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 신규 회원학회 인준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학술지 심사) 그리고 이사회의 인준 심사를 통과한

대한취담도학회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를 대한의학회 신규 회원학회로 인준하였다. 이로써 대한의학회에는 150개 학회가 회원학회 명단에 등재되게 되었다.

#### ·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제3호 등재자로 객현모 교수 외 16명 선정

의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의 육성과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한의학회는 2008년 11월부터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객현모, 김기호, 김상인, 김세경, 김영택, 서병설, 심봉섭, 심상환, 윤치왕, 이동식, 이문호, 이선근, 이유복, 조동수, 조중삼, 주근원, 홍창의 교수를 제3호 등재자로 선정했다.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를 마련하여 헌정 되신 분들의 업적과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 · 의학학회 대상 시상

2010년 한해동안 국내외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학술활동을 한 대한영상의학회에 “의학학회 대상(최우수상)”, 대한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에 “의학학회 대상(우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또한 학술활동 성취도가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위암학회에 “의학학회 대상(장려상)”이 주어졌다.

#### · 제3회 가승의학상 이효석 교수 수상

대한의학회와 가승재단(동화약품)은 지난 10년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대한의학회 발행)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저자를 선정하는 가승의학상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수상자에게는 1천 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데 제3회 수상자로 이효석 교수(서울의대 내과)를 선정하였다.

#### · 18억의 2011년도 예산확정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의 학술사업에서 차지하는 의학회의 위상과 회원학회의 육성 지원을 위해 의협에 총 7억 8천 만원의 예산지원을 신청하기로 결의하는 등 전년도보다 8.9% 인상된 18억의 예산을 확정했다. ■

## 제7회 바이엘쉐링임상의학상 수상 소감

지난 3월 29일에는 제7회 바이엘쉐링임상의학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수상자로부터 수상소감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방 영 주 (서울의대 내과학)



먼저 제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한만청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상을 지원하는 바이엘 헬스케어의 Friedrich Gause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접하고 아주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

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 항상 제 옆에서 저를 support 하는 제 아내, 그리고 아들 지호, 딸 지원, 약간은 극성스러운 누이들.

사실 저는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의사'의 길을 보여주신 여러 교수님과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인 조승열 교수님은 의학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학생인 제가 직접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내과를 전공하게 된 것은 내과학교실의 자상한 민헌기 교수님과 특출한 김노경 교수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종양내과를 전공하게 된 것은 김노경 교수님의 강력한 카리스마, 그분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전혀 끌리지 않는 내과전문의, 종양내과 전문의로 성장하게 해준 내과학교실의 여러 교수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수를 끝내고 귀국한 저는 김노경 교수님의 지도 아래 국내 최초의 신약인 선프라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신약 개발, 새로운 항암제 개

발 분야에 저의 관심과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조그만 소망,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욕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암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새로운 항암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꿈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실험실과 클리닉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능숙치 않은 영어를 가지고 많은 여행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2010년은 제게 아주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한 ToGA 연구에서 HER2 양성인 진행성 위암환자의 생존기간을 Trastuzumab의 병용으로 연장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위암 치료에 표적치료제가 유효함을 보인 최초의 연구로서 이미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성 위암 치료전략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ALK 양성인 폐암에서 Crizotinib의 연구는 비록 제1상 연구였지만, 너무나 분명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미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폐암 환자들이 그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과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ToGA 연구는 24개의 나라의 140여 병원이 참여하였고, 우리 병원에서는 저 외에 김태유 교수, 임석아 교수, 오도연 교수, 그리고 여러 전임의, 전공의, 인미순 연구간호사, 최정실 연구간호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로슈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용히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



## 공정경쟁규약 관련 일문일답(Q&A)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회원학회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는 3월 8일에 회원학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문의에 답하기 위해 상설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 게재한 일문일답은 규약의 내용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개별 상황에 따라 쉽게 풀어 정리한 것이다. 회원학회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편집자 주 -

**Q. 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학회로부터 서면으로 국내 학회 및 대행사가 위임서를 받아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내 관행을 잘 모르는 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보건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소규모 학회나 의학 연구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절차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A. 관련 부서의 유관해석이므로 아직까지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임서를 요청하고 규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가 신뢰도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계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의학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Q. 대한의학회 미 가입된 학회도 학술대회 개최지원 및 기부 받을 수 있나?**

A. 미 가입된 학회도 아래 규약 및 기준에 적합하면 수혜 대상이 된다. 기본조건은 의학연구목적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현재 규약상에 있는 학회(국내학회 및 국내소재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해외개최 학술대회)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아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고 : 규약 제9조 1항 2호, 세부운용기준 제4조 1항,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대한의학회)

**Q. 힘든 경합과정을 거쳐 국내에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정의만 내려져 있을 뿐, 일반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차별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가 협회에 지원 요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부담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참고 : 규약 제3조 8항 및 제8조 4항, 세부운용기준 제5조 6항

**Q. 학술대회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게 전시 부스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광고 내역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기부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조항) 규약 제8조 6항, (……)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5조(전시, 광고)가 결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Q. 학술대회 규모가 작아 메인스폰서 없이 부스나 광고 유치만으로 학술대회를 수행할 경우에도 학술대회 개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나?**

A.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각 분기별 지급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할 경우, 학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참고 : 규약 제15조, 세부운용기준 제11조

**Q. 학술대회 기간 중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지? 또한 학회 기간 중에 런천심포지엄 비용을 학술대회운영 총비용과 별도로 계정할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런천심포지엄 형식으로 학술대회 기간 중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해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청 주체는 학회가 되며(제품설명회의 신청 주체는 사업자임) 따라서 총지출 비용

에 제품설명회 개최 경비를 포함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20%)도 이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학회 기간 중 오직 제품설명회 하나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고, 학회 예산과 분리해서 계정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Q. 제품설명회를 학술대회와 별도의 행사로 취급하면 신청 절차와 학회 자부담 총측측면에서도 학회에 유리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규약에 있는지?**

A. 규약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및 제9조(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따른다.

**Q.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에 보면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35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에서 이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호텔 가격이나 서울의 특가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실성이 부족한 이러한 가격 책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A. 좋은 지적이다. 이 부분은 세부운용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제,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숙박비의 국내, 외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별로 여비의 상한 총액을 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 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

**Q.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신약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를 비롯한 참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A. 제품설명회는 국내 개최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약상에는 국내,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서상 국내 개최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의료기기에 관련해서는 해외 교육목적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Q. 하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도 가능한가?**

A. 외부 개최의 경우 가능하지 않다.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의 제품 설명회는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Q. 규약상에 강연료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강연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저문료에 관한 기준이 있나?**

A. 규약에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다. 조사해 보니 다국적 제약업체는 40분 이상 강의, 10명 이상의 청중, 강연내용 녹음/녹취, 1시간 강의로 50만원 이내, 하루 강연료 100만원까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의료기기업체는 40분 이상 강의, 10명 이상의 청중 등 자체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저문료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Q. 대한의학회 미가입된 학회이며 학회 통장이 회장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통장으로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나? 또한 부스료에 대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되니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부스/광고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므로 업체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리하면 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발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다.)

**Q.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 기사(병리기사)도 규약의 대상이 되는가?**

A. 제약업계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업체에서는 그 외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기사 등도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직종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 : 규약 제2조(기본원칙)

##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규정

대한의학회 제정 : 2011. 4. 12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국내학회”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 3 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 ①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 ②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전자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결산,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타

### 2) 국내 소재 국제학회

- ①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학회
- ② 구비 서류 :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별표3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기타
- ③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 3) 국내학회

- ①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일 경우 :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인정하는 학회로 본다.
- ②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일 경우 :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i) 구비서류 : 국내학회 인정 신청서(별표 4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기타 단,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일 경우에는 회원학회에서 발행한 산하학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ii)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심의비용)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의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회의) 인정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록) 위원회는 인정 심사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 7 조 (의결) 인정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결과보고) 인정 심사 결과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통지한다.

제 9 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임 학회 대표자 인터뷰

새로 학회를 책임질 학회 대표자들의 포부와 계획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호에 대한이과학회 회장님과 대한마취과학회 이사장님을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Q.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계획과 포부를 밝혀주시시오.**

우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20살의 멋진 학회가 된 대한이과학회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대한이과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규모나 학술활동이 그 어느 학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이비인후과의 개원 상황이 좋지 않고 전공의 지원도 많이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개원의 선생님들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과학에 대한 최신지견을 제공해 드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께는 이과학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이과학의 블루오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여건을 마련하여 인기 많고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대한이과학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임기 중 중점 추진사업은 어떤 것들이있으신지요?**

대한이과학회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많은 분들 사이에 연수 경험과 학문적 성과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김종선, 김희남, 박찬일, 전경명, 조태환, 차창일, 황순재 교수님 등 11분의 발기인

**조 용 범 (대한이과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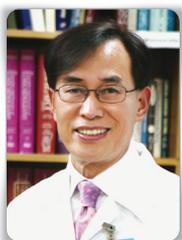
을 포함한 42명의 이과 연구자들이 1990년 6월 1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창립총회 겸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여 대한이과연구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부터는 모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학술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2007년에는 대한의학회의 공식 회원학회인 대한이과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의 이과분야의 선생님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위하여 처음으로 'Contemporary Opinions in East-Asian Otolaryngology'를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와 함께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0년 11월에는 대만에서 두 번째 모임이 열렸고, 2012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중국에서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이과학회는 국내 국외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재임기간 동안 학회의 특별한 학술대회 일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2011년 3월 13일 보청기 워크샵, 2011년 4월 2일(토)~3일(일) 제4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2011년 4월 3일(일) 2011 이과검사의 술기와 판독, 2011년 5월 2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과심포지엄, 2011년 5월 14일(토)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2011년 6월 25일(토)~26일(일) 2011 이과수술의 술기 및 측두골 미세수술실습, 2011년 8월 28일(일) 제5차 임상이과학 세미나, 2011년 10월 8일(토) 제5차 기초연구워크샵, 2011년 10월 20일(목)~21일(금) 제43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종 민 (대한마취과학회 이사장)**



**Q.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계획과 포부를 밝혀주시시오.**

지난해 11월 대한마취과학회 이사장에 취임 후 두 가지 중점사업을 회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마취 및 통증치료의 수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가와 신기술, 신의료에 대한 보험항목 개발 등 보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마취통증의학의 홍보입니다. 마취와 통증치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아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Q. 재임기간 동안 학회의 특별한 학술대회 일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학회의 주요사업이 학술활동이므로 기존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활성화하고 8개 세부전문화회를 적극적으로 도와 회원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본, 중국 마취과 학회와 교류 협력할 예정이며 나아가 가까운 아시아권에 낙후된 의료국가를 상대로 교육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대한의학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저희 학회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학회 회보 제105호

| 발 행 처 | 대한의학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Tel. (02)798-3807 Fax. (02)794-3148  
 | 발 행 인 | 김성덕 (ksdeok@cau.ac.kr) | 편 집 인 | 김숙희 (sookkim@hitd.net)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73-2497)